

기숙사 운영 규정

제정 1996. 3. 1. 개정 2000. 8. 1.
개정 2001. 9. 1. 전문개정 2013. 7. 1.
개정 2014. 3. 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생들에게 면학과 편의를 제공하고, 공동생활의 숙달을 통해서 인격 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경대학교 기숙사(이하 “기숙사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기숙사의 명칭은 “글로벌빌리지”로 한다.

제 3 조 (위치) 본 기숙사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4 조 (운영관리) 기숙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총장이 운영 관리한다.

제 5 조 (입사심사 대상) 기숙사의 입사심사 대상은 본교 신입생과 재학생 중 통학권 (대구광역시 및 본교 근교)밖에 거주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조 (개사시간) 기숙사의 개사시간은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 기간으로 하되 총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사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사 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이용제한) 기숙사 이용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, 입사된 학생 (이하 “사생”이라 한다)에 한한다. 다만,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

제 8 조 (사생수칙) 총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사칙을 따로 정한다.

제 2 장 운영위원회

제 9 조 (설치) 기숙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경대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10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③ 간사는 사무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11 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숙사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입사생 선발에 관한 사항
4. 사생부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
5. 기숙사 자체 사업계획
6. 기타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

제 12 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 장 조 직

제 13 조 (임직원) ① 기숙사의 사생지도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둔다.

1.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총장을 두며, 본 대학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2. 기숙사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며, 기능직 이상의 행정직으로 하고 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3. 기숙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직원 (이하 사감)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14 조 (총장) ① 총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감독 하며,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 및 다음의 업무를 관장 한다

1. 사생의 생활 및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
2. 입·퇴사 관리 및 기숙사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3. 사생의 급식 및 비품관리
4. 사생의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
5. 기숙사 시설 및 용품관리에 관한 사항
6. 사생운영에 관한 사항
7. 입사생의 사실배정에 관한 사항
8. 기타 기숙사 운영 및 사생들의 실 배정에 관한 사항

제 15 조 (사무직원 및 사감) ① 사무직원은 총장을 보좌하며 기숙사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운영 및 사내 업무에 관한 사항과 사감을 감독한다.

③ 사감은 총장의 명을 받아 야간점호, 당직, 사생지도, 미화, 설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.

④ 사감은 총장과 사무직원을 보좌하며 기숙사의 경비 및 시설을 관리하고 사생생활의 편의를

위한 기숙사의 청소 위생 등을 담당하며, 촌장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운영 및 사내업무에 종사한다.

제 4 장 사생선발

제 16 조 (입사자격) ①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본 대학 신입생을 원칙으로 하되, 여실이 있을 때에는 재학생도 입사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선발기준) 입사를 원하는 학생 수 가 수용정원을 초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촌장이 입사자를 결정한다.

1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(동일한 조건일 경우 원거리 자)
2. 지체부자유자
3. 보훈 대상자
4. 기숙사에 입사할 필요가 있다고 촌장이 인정하는 자

제 18 조 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기숙사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
4. 휴학 중 인 자
5. 품행이 방정 하지 못한 자
6. 기타 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 19 조 (모집공고) 촌장은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, 재학생의 경우는 학년 및 학기 종료 15일 이전에 사생모집을 공고한다.

제 20 조 (사생선발) ①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신청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② 촌장은 배정인원과 선발기준에 따라 사생을 선발 한다.

③ 촌장은 선발된 입사생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등록 통지서를 발송한다.

④ 입사 등록 후 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입사 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사생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추가 입사자를 선발 한다

⑤ 2학기 사생선발 시 자진 퇴사자, 사생수칙 위반자, 성적불량자는 선발에서 배제토록 한다.

⑥ 전호 외 필요한 사항은 선발원칙을 따로 정하며 시행한다.

제 21 조 (입사등록) 지정기일 내에 입사등록을 아니한 자는 입사자격이 취소된다.

제 22 조 (퇴사처분)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촌장은 지체 없이 징계 처분하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.

1.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(과 실점 30점 이상을 받은 자)
2.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 23 조 (퇴사절차) ① 퇴사는 매 학기가 끝난 후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자의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결정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(퇴사신청서, 호실 키(출입카드)를 사감실에 반납하여야 한다)

제 24 조 (입사허가 기간) 입사허가 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 25 조 (경비부담) 기숙사의 시설비,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 사생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.

제 26 조 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27 조 (납부금) ① 매 학기당 소정의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사생은 입사비 외에 기숙사비를 포함한 납부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납부금의 납기) 납부금의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한다.

① 입사비 및 기숙사비는 매학기 1회로 등록기간대로 한다

제 29 조 (납부금의 사용) 납부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.

1. 경미한 시설보수
2. 기숙사 운영
3. 난방연료 및 공공요금
4. 비품비 및 기타경비

제 30 조 (환불) ① 입사일(개강일)이후 퇴사 시에는 입사비는 환불되지 않고, 기숙사비에 대해서만 수업일수의 1/2이전에는 해당 기숙사비의 반액이 환불되며, 1/2이후에는 환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. 단 식비에 대해서는 잔여 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(식비는 주당 계산)

제 31 조 (시설물 훼손 변상)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설비 및 공동 비품 등의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분의 변상을 한다.

제 32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①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